

# 보수위원회 운영규정

팬오션 주식회사

# 보수위원회 운영규정

制定 2009.04.13

改定 2015.08.12

改定 2022.05.09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Pan Ocean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정관 제 42조 및 제 44조에 따른 보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, 주요 임원, 각 상근이사 및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(또는 동일직급 이상의 경영진)의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사회에 제안한다.

1. 성과평가 및 보상 기준
2.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액
3. 성과급 지급방법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 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,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 중 임원 보수에 관한 분야에 식견이 있는 이사가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 내부 및/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### **제5조 (위원장)**

-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**제6조 (위원의 임기)**

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.

## **제 3 장 회 의**

### **제7조 (소집권자)**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 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**제8조 (소집절차)**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**제9조 (위원회 소집)**

- ① 정기위원회는 연 1회 소집하여야 한다.
- ② 임시위원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.

### **제10조 (결의방법)**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의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**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 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**제12조 (보고의무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 후 최초소집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**제13조 (통지의무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 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### **제14조 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### 제15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 제16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# 부 칙 (2009.04.13 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(2015.08.12 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(2022.05.09 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